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2. 7)

1. 심사 경과

가. 2004. 11. 29 : 사천시장제출

나. 2004. 12. 2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63호)

다. 2004. 12. 7 :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제안 이유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이 지방공무원법과 상이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55세이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 연장조항 삭제
- 2) 인용 법령조항 및 용어 정비
 - 방법원 ⇒ 지도원
 - 경찰서·지서 및 파출소 ⇒ 경찰관서
 - 지방공무원법 제68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지방공무원법과

상이하여 현행법령과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되는 내용 중

- 제4조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자부 표준안이 지도원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경찰서·지서 및 파출소”를 “경찰관서”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서 및 파출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경찰관서로 개정하는 것임.
- 제5조의 제3항을 삭제 하는 것은 고용직의 근무 상한 연령을 별표에서 57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조항을 삭제 하는 것이며
- 제10조의 법 제68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치는 것으로서

○ 본 조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